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설치·운영 의무화 >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752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설치·운영 의무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3. 10.
3. 회 부 일 : 2025. 3.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365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지원 부족 등으로 상시 운영할 수 없고,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설치·운영 의무화

개정안은 권역별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u> (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 ----- ----- ----- ----- - <u>권역별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u> ----- ---- <u>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규모, 권역 내 피해건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u>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의 권역 설정, 설치·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법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일명 “해바라기센터”)는 2025년 7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4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시·도별 해바라기센터 설치 현황 >

(2025. 7월말 기준,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1	5	2	2	3	2	1	1	6	3	2	2	3	3	3	2	1

-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해바라기센터 유형 >

(2025. 7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주요 기능	지원 개소 수	
위기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상담, 의료, 수사·법률 서비스 제공(경찰 24시간 배치)	41	18
아동	성폭력 피해 19세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대상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경찰 출장)		7
통합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경찰 24시간 배치)		16

그런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365일 24시간 대응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등 지원 인력 부족 등으로 상시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대응 등 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 19 발생으로 야간 당직 의료진 등 인력 공백으로 인한 상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²⁾, 2024년 전공의 파업 이후 의료인력 부족으로 안정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역별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지원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

2)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 공백, 야간 당직 의료진이 없거나 경찰 인력 부족, 관할이 아니라 접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응급대응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툇뉴스] 해바라기센터, 24시간 운영 아닌가요?, 2022. 9. 12., 연합뉴스, [취재후] ‘성폭력 피해 지원’ 해바라기센터는 왜 문을 닫나? , 2021. 3. 14.), 예산 부족과 인력난으로 24시간·365일이라는 문구는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뉴스(MBN, 2022. 4.12, “여가부 존치 논란 속 해바라기센터 운영은 … 성범죄 피해자 불안감 고조”) 등이 보도되었음.

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상담·심리치료, 응급키트 및 산부인과 진료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신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이 있는 종합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되어야 하는데³⁾,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권역별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오히려 법률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집행가능성 및 실익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개정안은 권역별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인구규모, 권역 내 피해건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되, 권역 설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현재보다 센터가 더 많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그 권역의 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⁴⁾.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는 입장임. 다만, 상담·심리치료, 응급키트 및 산부인과 진료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

3)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의료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의 응급조치 및 치료 지원, 법의학적 증거물 확보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진료과목(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의료진들의 참여가 수반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해바라기센터 2023 연감』, 2024. 5, 24면.

4) 대통령령에서 권역의 범위를 넓게 설정할 경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됨.

센터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등) 내에 설치되어야 할 것인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권역별 설치가 의무화 되더라도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사무공간, 의료인력 등의 부담 지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의료기관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50
